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1160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650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116089 판결

전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대리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균

변론 종결 2021. 9. 2.

판결 선고 202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5. 12. 접수 제263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회사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C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2013. 8. 22.(E)	2021. 2. 10.	255,000,000	2013. 8. 22.	300,000,000
2	2020. 12. 31.(F)	2020. 12. 31.	205,600,000	2020. 1. 3.	257,000,000

나. 한편 C는 2020. 5. 7.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20. 5. 12. 접수 제2633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감정평가액 합계 1,432,969,9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감정평가액 28,864,000원인 공장기계 및 시가 12,000,000원인 진주시 G 전 1547m'가 있는 반면, C가 부담하는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대위변제원금	434,346,042
2	H은행	2014.09.25. 대출	190,000,000
3	2015.06.19. 대출	445,000,000	
4	2017.11.15. 대출	200,000,000	
5	2015.06.25. 대출	50,000,000	

1	원고	대위변제원금	434,346,042
6	2007.08.22. 대출	138,614,000	
7	피고	미수대금	129,831,979
8	I	퇴직금	5,941,607
9	J	22,791,605	
10	K	30,599,879	
11	L카드	채권 원금	18,978,100
12	북부산세무서	국세 체납액	32,757,320
13	M	물품대금 원금	30,000,000
14	N회사	양수금	15,763,230
15	○회사	36,749,720	
16	P회사	물품대금	14,332,080
17	Q회사	4,771,800	
18	R카드	2019.05.31. 대출	3,146,000
19	2018.04.24. 대출	7,000,000	
20	S회사	2019.08.06. 대출	18,334,000
합계금	1,828,957,362		

라. C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출금채권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0. 7. 1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434,346,042원(226,077,287원 + 208,268,75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2020. 10. 14.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434,038,9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의창구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T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바, C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원고가 신용보증을 한 금융기관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임은 역수상 분명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20. 5. 9.부터 두 달 이내인 2020. 7. 13.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위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C가 2020. 7. 13.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순차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1,473,833,900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1,828,957,3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유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면, C는 피고 회사와 거래를 계속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 ① C는 부산 사상구 U에서 D회사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는 인천 남동구 V에서 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7. 8. 5.경부터 C에게 금속제품을 공급하여 왔다.
- ② 피고 회사와 C의 거래는 피고 회사가 먼저 금속제품을 공급하고, C가 다음 달 말일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C는 공급받은 물품대금보다 적게 결제함으로써 미수금액이 점차 증가하였다(2017. 12. 31. 기준 미수대금 69,382,445원, 2018. 12. 31. 기준 미수대금 129,262,556원, 2019. 12. 31. 기준 미수대금 128,366,779원).
- ③ C에게 수차례 미수대금 결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4월 기준 미수대금이 129,831,979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 회사의 이사인 W은 2020. 4. 23.경 C에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고려하면 C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채권액수에 비해 과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수수료 및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 ④ C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20. 5. 7. 이후부터 2020. 6. 17.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11,190,256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

⑤ C는 2017. 8. 5.경부터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 거래를 계속하였을 뿐, 달리 둘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은정

별지